

일본군 '위안부' 범죄책임자 처벌요구에 대하여

에프르 도츠가(國際友和會, IFOR)

요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유엔 내에 있어서 일본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어 실시하고, 아시아, 특히 한국여성을 성적노예제도의 피해자로 만든 일본정부에 의한 범죄행위가 국제법에 있어서의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범죄책임자를 수사, 고소, 처벌하도록 일본정부에 대해 요구해 왔다. 필자는 일본사법당국 정부 국회가 이 한국 정대협의 요구를 성실하게 받아들여 이에 즉시 대응할 것. 특히 이 요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도록 별지의 제안과 같은 필요한 입법을 긴급히 실현하도록 기대한다.

이유

1. 책임자처벌에 관한 법적 소재

국제법상 문제가 국제적 혹은 국내적 형사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 피해회복이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금년 8월 중대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에 권리에 관해 중대인권침해를 받은 노예 등 피해자 개인은 그 피해의 진상규명, 가해범죄 처벌, 미래의 재발방지 조치 등 사죄, 추모, 금전적 배상등을 포함한 피해회복을 가해국가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특별보고자인 반 보벤 교수의 보고서를 받아 이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결의를 했다.

지금까지 정대협을 비롯하여 필리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관계단체들도 많은 아시아 여성단체, IFOR 등 유엔 NGO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배상 등 피해회복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하고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법하에서의 과거의 전쟁범죄(협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 기타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자를 일본정부 당국은 스스로 형사사건으로 수사, 고소, 재판, 처벌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그 국제법상의 타당성, 필연성에 관해서는 1992년 12월 12일 동경에서 개최된 일변연 제 2 회 국제인권세미나에 있어서 박원순 변호사가 해명했고, IFOR도 92년 5월 유엔 현대노예제 부회에서 주장해 왔다. 문제는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명문화된 법률이 일본에 없기 때문에 [헌법 31조 등의 제약에 따라 즉시 처벌하는 국제적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예에 따라 급히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에서의 사례

일본과 같은 주축이었던 독일은 형사고소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등 입법을 유연하게 운영해서 현재까지도 과거의 전쟁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국가로서 이스라엘은 과거의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처벌을 거슬러 올라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했다. 또한 영국, 호주등도 전쟁범죄법을 입법하는 등 과거로 거슬러 전쟁범죄 처벌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 이러한 입법을 하지 않고, [일본은 과거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 기타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한 책임자를 한사람도 스스로 처벌하지 않았다.]라는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러한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3. 소급적 처벌의 법적 가능성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제국 군, 정부에 의한 수많은 범죄행위는 당시 일본제국법에 비추어서도 살인, 납치, 강간, 강요, 폭행, 상해, 협박 등 많은 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 사법당국도 전후 일본사법당국도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모든 죄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상태이고 현재 일본국내법상 실제적인 처벌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소 시효 완성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이다라는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소급입법에 의해 처벌을 가능케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과거범죄에 대해서 현재 입법하므로써 과거에 소급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제인권(자유권) 규약 15조 1항은 (시행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한 것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항은 [실행시에 ..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허락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 2항은 [이 조항에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이 일반원칙에 따라 시행시에 범죄로 되어 있던 작위 또는 불작위를 이유로 해서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가 제 1차 대전당시 이미 국제법상의 범죄였던 것은 뉴렌베르크 및 동경국제군사법정, 국외 유엔결의 등에서 확인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들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법에 일반원칙에 따라 실행시에 범죄로 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전쟁범죄처벌을 가능케 하는 범위를 입법케 해서 과거의 전쟁범죄를 처벌해도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인정받아 온 것이다. 오히려 일본이 같은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은 늦었긴 하지만 국제관습법, 국제노동조약, 매춘업관계 3조약 등에 있어서의 국제법상의 의무 이행에 필수라고 할 것이다.

4. 일본의 전쟁범죄재판 수락과 아시아 일본군 '위안부' 처벌

그런데 일본이 스스로 처벌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과거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 그 형사처벌을 승인한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극동국제군사재판 및 기타 연합국의 BC급 전범재판 법정에서의 처벌은 포츠담 선언의 수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동 11조)에 즈음해서 일본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영,미 등 연합국의 포로에 대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반한 처벌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중에 네덜란드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책임자에 대해서 네덜란드 군 사법당국에 의해 수사, 고소, 재판, 처벌(사형을 포함한다)의 승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은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가 백인일 경우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는 것, 범죄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할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시아 특히 한국, 조선여성일 경우에는 똑같은 성적 노예제 피해자(사망자도 훨씬 많고, 피해기간도 네덜란드 여성보다도 훨씬 길다)에 대한 가해행위가 범죄이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도 승인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시아 특히 한국, 조선여성에 대한 현저한 멸시와 차별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국제인권[자유권] 규약 26조 참조). 이 점에서도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성적 노예제라고 하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 이것을 솔직하게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을 가능케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일본정부에 의한 사실인정과처벌의무

[인도에 대한 죄]의 정의는 전기 뉴렌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규정,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규정에 의해 밝혔지만 그 주요범죄 구성요건의 전형적인 예로서 [노예화]가 있다. IFOR, 한국정대협 등 유엔, 국내 NGO는 전기와 같은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성적노예제'임을 유엔 내에서 주장해 왔다. 그래서 6월달에 채택된 세계인권회의 최종문서, 빈 선언 행동계획에서도 '성적노예제'라는 말이 정식으로 채용되었다. 그 후 이말은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 전시노

예제결의의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8월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제2차 정부보고서 및 호녀 관방장관(당시) 담화를 발표했다. 이것은 진상규명이라는 점에서 말하면 지극히 불충분한 것이었지만 일본정부는 적어도 일본군 위안부, 위안소 제도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해서 일본제국은 관현 및 그 지시를 받은 자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 제도가 성적노예제의 요소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별도 피해자 증언, 민간조사결과에 의해 이미 밝혀진 것이지만 이 사실승인에 의해 법적 평가는 미흡하나 일본정부가 이 기본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었다. 이 단계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최소한 [인도에 대한 죄]의 피해자임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인도에 대한 죄]가 현재한 이상 그 범행지를 관할하는 일본정부가 국제관습법상의 책임자 처벌의무를 갖는다.

그 후에 이 사실에 최소한의 확정에 의해 일본정부에 의한 강제노동조약상의 처벌의무 위반, 매춘부관계 3조약상의 처벌의무위반도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성문국제법상 명문의 처벌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강제노동조약상의 의무가 있다(1930년 IL029호 조약 일본은 1932년 비준). 동조약 제 11조는 일정 연령범위의 남자만을 강제노동을 허락하고 있고, 여자에 대한 강제노동은 일체로 금지하고 있다. 전기 8월 4일 제 2차 조사결과발표에 즈음해 일본정부는 대다수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동조약 위반의 사실의 전제를 인정한 것이 된다. 이 경우, 동조약에는 [보상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지만] 강제노동을 강요한 자를 형사범죄자로 처벌해야 할 의무를 일본정부에게 짊어지게 할 명문규정이 있다. (동조약 25조). 그래서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성적노예노동을 강요한 범죄책임자 처벌의 의무를 틀림없이 갖고 있다.

둘째로,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를 금지한 3조약이 있다. 거기에는 식민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외규정이나 유보사항이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시명령, 허가, 수권 등의 행위이다. 동경에 있는 군중양부에서 행해졌고, 많은 경우 연행 시에 일본군 선박을 사용했고 연행할 때 일본 제국 군인, 관헌등이 간여했기 때문에 이들 조약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매춘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부녀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1910년 조약, 일본은 1925년에 가입) 1조에는 매춘목적으로 미성년 여성(21세 미만)을 권유 유인 또는 납치한 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되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또한 그 2조에는 매춘 목적으로 사기에 의해 혹은 폭행, 협박, 권력 남용 기타 일체의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 성년 부인을 권유, 유인, 납치한 자도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 위에 동 조약 3조는 이들 규정에 저촉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 에서 본 공화국 위원회 중간 보고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131명 중 81명이 미성년 (20세 미만) 시에 연행되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거의 모든 일본군 위안부가 속았거나 다른 강제적 수단으로 연행되었다는 것, 위안소에서는 전면적으로 강제를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가해 행위에 있어서 일본 정부에게 처벌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도 일본 정부는 배상문제와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협정등 국제조약에서 처리가 되었다]라고 변명할 것인가? 한일협정을 예로 한다면, 1965년 한일간에 체결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에 의해 [완전하며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재산 권리 및 이익에 관한 문제]는 [법률 상의 근거에 의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제적 권리 및 양 체결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을 말한다]인 것이고, '동 협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 2조' 이러한 일본의 일본의 범죄 처벌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일본 정부라고 해도 이러한 항변은 하지 못할 것이다.

6. 장래 같은 종류의 국제법 위반 범죄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보증의 필요성

일본은 오랫동안의 터부를 깨고 지금 자위대를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아시아등 각지에 파

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많은 아시아 사람들은 일본군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커다란 의구심을 안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대해 과거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 등 국제법에 위반한 범죄행위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 입법 조치는 과거의 범죄행위의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국제법 위반 범죄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될 것이다. 책임자 처벌 만이 앞으로 비슷한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실효적 예방조치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나온 유엔 특별보고자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일본 정부 국회가 피해자의 요구 실현을 위해 협력해서 일본 스스로가 과거의 전쟁 범죄를 밝히고 과거와 미래에 걸쳐 국제법 위반 범죄의 책임자 처벌을 가능케 하는 법률을 즉시 입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